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12일, 박선하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복지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선하 의원

나. 제안이유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안전하게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다.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영진)

□ 제정취지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¹⁾ 및 제16조²⁾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함.
- 다른 시도의 유사 조례 입법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타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 입법 현황〉

(2024년 3월 현재)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비 고
서울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09. 26.	
부산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02. 14.	
대구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4. 10.	
인천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1. 07.	
광주	광주광역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2021. 11. 03.	
대전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2021. 07. 30.	
울산	울산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3. 1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4. 15.	
경기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05. 02.	
충남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4. 30.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2021. 06. 10.	
전남	전라남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9. 30.	
경남	경상남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16. 03. 1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6. 10.	

□ 주요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본칙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1조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청소년

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관련 기관·단체의 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³⁾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다른 청소년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계획적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가정 밖 청소년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3)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4)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4조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제1항⁵⁾에서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제정안은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실태조사가 각각 이루어져 중복조사 또는 조사비용이 과다지출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피조사대상자(가정 밖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감수성을 지닌 사춘기에 해당함에 따라 각각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수치심과 낙인 되는 문제가 우려됨. 따라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제1항을 반영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조사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행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제정안	수정안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u>4년</u>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실태조사) ① ----- ----- ----- <u>3년</u> ----- -----. ② (제정안과 같음)

5)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안 제6조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전문가의 상담, 보호, 교육문화·복지 지원, 청소년복지 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등 세부적인 사업을 규정하고,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규정한 것임. 이는 「청소년 기본법」 제49조⁶⁾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안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⁷⁾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

6)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학·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

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를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함 것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 관련 법인⁸⁾과 단체⁹⁾로 구성되어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들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체계로서 가정 밖 청소년 조기발견과 보호 및 가정과 사회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통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지원계획수립과 지원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9)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다만, 안 제5조의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시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관련부서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등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환경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사업수행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년 4월 24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1. 수정 이유

가.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조사주기를 일치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를 4년에서 3년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1항)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6. 수정안 본문 : 붙임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4년”을 “3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가 정 밖 청소년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u>4년</u>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실태조사) ① ----- ----- ----- <u>3년</u> ----- -----. ② (제정안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5.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 지원
7.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자립 지원 및 사후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등 유관기관

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1]

경상북도 및 시군 청소년안전망 운영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청소년 발굴·상담·보호·자립 등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 도모
※ 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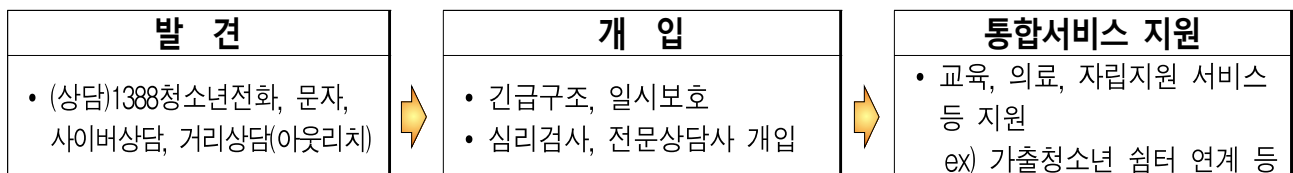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대상 : 도 및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사업량 : 22개소(도 1, 시군 21) ※ 미설치 : 울릉
- 운영기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지역 중 여성가족부의 실사를 거쳐 사업 운영기준시설을 갖춘 센터
- 사업비 : 2,932백만원(기금 1,466, 도비 307, 시군 1,159)
※ 도 614(기금 307, 도비 307), 시군 2,318(기금 1,159, 시군비 1,159)

> 주요 사업내용

- 도 및 시군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따른 인건비 50명(도 6, 시군 44)
 - 일시보호소 운영, 상담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 1388지원단(상담·멘토지원단, 발견·구조지원단) 등 운영
- 청소년안전망 사업운영(필수연계기관 구축운영)
 - 위기청소년통합지원(교육, 의료, 법률, 취업, 자립지원 및 연계)

【 지원 체 계 】



※ 필수연계기관 : 지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시·도교육청, 학교,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공공보건의료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관찰소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 현황

> 2023년 추진실적

구 분	계	도	시·군	비 고
계	56,714(명)	21,916	34,798	
청소년전화 1388운영	17,652(명)	6,481	11,171	도 : 24시간 운영 시군 : 9:00~18:00 운영
일시보호소 운영	22(명)	22	-	일시보호소 도센터에서만 운영
청소년지원단 운영	39,040(명)	15,413	23,627	발견·구조지원단, 상담·멘토지원단

> 청소년안전망 예산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2023년				2023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23	2,694,896	1,364,865	207,163	1,157,702	2,931,914	1,465,957	306,971	1,158,986
도	1	411,436	207,163	207,163	-	613,942	306,971	306,971	-
시군계	21	2,179,290	1,104,891	0	1,104,891	2,317,972	1,158,986	0	1,158,986
포항시	1	104,170	52,811		52,811	104,170	53,760		53,760
경주시	1	104,170	52,811		52,811	104,170	53,760		53,760
김천시	1	104,170	52,811		52,811	104,170	53,760		53,760
안동시	1	104,170	52,811		52,811	104,170	53,760		53,760
구미시	1	104,170	52,811		52,811	104,170	53,760		53,760
영주시	1	104,170	52,811		52,811	104,170	53,760		53,760
영천시	1	104,170	50,051		50,051	104,170	51,000		51,000
상주시	1	104,170	52,811		52,811	104,170	53,760		53,760
문경시	1	104,170	52,811		52,811	104,170	53,760		53,760
경산시	1	104,170	52,811		52,811	104,170	70,843		70,843
의성군	1	104,170	52,811		52,811	104,170	53,760		53,760
청송군	1	101,410	51,431		51,431	101,410	52,380		52,380
영양군	1	104,170	52,811		52,811	104,170	53,760		53,760
영덕군	1	104,170	52,811		52,811	104,170	53,760		53,760
청도군	1	104,170	52,811		52,811	104,170	53,760		53,760
고령군	1	104,170	52,811		52,811	104,170	53,760		53,760
성주군	1	104,170	52,811		52,811	104,170	53,760		53,760
칠곡군	1	104,170	52,811		52,811	104,170	53,760		53,760
예천군	1	104,170	52,811		52,811	104,170	53,760		53,760
봉화군	1	98,650	52,811		52,811	98,650	52,380		52,380
울진군	1	104,170	52,811		52,811	104,170	72,223		72,223
울릉군	-								

[참고자료 2]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 도·시군 청소년쉼터(7개소)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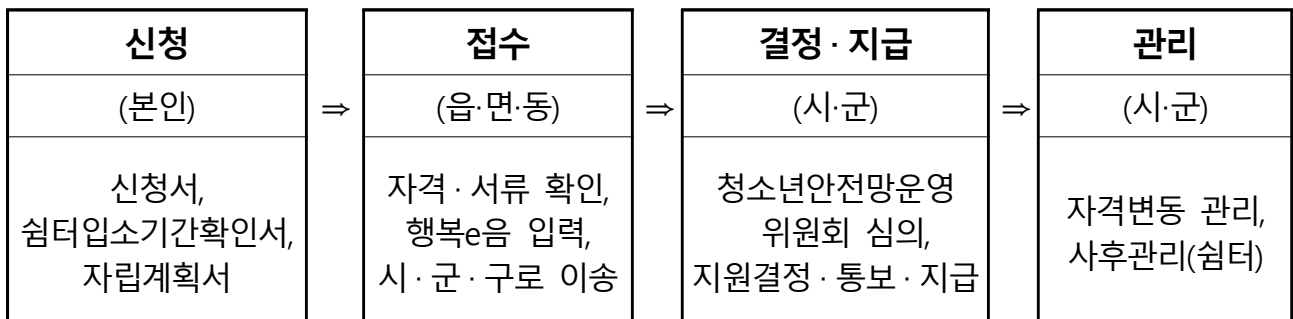
- 사업내용 : 가정 밖 청소년(9~24세)의 생활보호, 상담·심리검사, 의료·교육지원, 문화활동 등 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개소당 7명씩), 운영비, 프로그램 활동비 등
- 유형구분 : 일시 24시간~7일 보호/ 단기 3개월~1년 보호/ 중장기 1~4년 보호
- 사업비 : 2,710백만원(기금 1,147, 도비 748, 시군비 815)

□ 자립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쉼터 입소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치유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 자격증 등 자립기술 향상 프로그램
- 사업비 : 26백만원(도비 12, 시군비 14)
- ※ 도 쉼터 2개소(도비), 시군 쉼터 5개소(도비 30%, 시군비 70%)

□ 퇴소자립수당 지원

- 사업내용 : 쉼터 퇴소청소년 대상 월 40만원 지급(최대 60개월)
 - 18세 이상인 자
 - 쉼터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쉼터를 이용
- 사업량 : 14명
- 사업비 : 66백만원(기금 33, 도비 33)
- 지원절차



붙임 1

도 및 시군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구 분 (운영주체)	'24년 예산액 (확정내시)	운영 유형	규모	정원 (보호기간)	운 영 현 황
도 청소년 남자쉼터 (경북행복재단)	495백만원 국 169 도 326	단기 (남자)	184㎡	10명 (3~9월)	• 개소일 : 2010. 11. 1. • 위 치 : 구미시 형곡로 • 종사자 : 7명
도 청소년 여자쉼터 (천주교안동교구)	402백만원 국 162 도 240	중장기 (여자)	268㎡	7명 (1~4년)	• 개소일 : 2005. 2. 16. • 위 치 : 안동시 퇴계로 • 종사자 : 7명 • 단기 → 중장기전환('11. 3. 1.)
포항 청소년쉼터 (사)포항청소년복지회관	359백만원 국 162 도 36 시 161	중장기 (남자)	185㎡	7명 (1~4년)	• 개소일 : 2012. 6. 1. • 위 치 : 포항시 북구 중흥로 • 종사자 : 7명
포항 청소년쉼터 (사)포항청소년복지회관	359백만원 국 162 도 36 시 161	중장기 (여자)	185㎡	7명 (1~4년)	• 개소일 : 2006. 11. 1. • 위 치 : 포항시 남구 상공로 • 종사자 : 7명
포항 청소년쉼터 (포항YMCA)	359백만원 국 162 도 36 시 161	단기 (여자)	196㎡	7명 (3~9월)	• 개소일 : 2022. 6. 13. • 위 치 : 포항시 북구 서동로 • 종사자 : 7명
경주 청소년쉼터 (한국BBS경북연맹 경주지부)	359백만원 국 162 도 36 시 161	단기 (여자)	218㎡	8명 (3~9개월)	• 개소일 : 2022. 4. 1. • 위 치 : 경주시 봉황로 • 종사자 : 7명
구미 청소년쉼터 (청소년맑은세상)	375백만원 국 169 도 37 시 169	단기 (여자)	215㎡	10명 (3~9월)	• 개소일 : 2007. 1. 5. • 위 치 : 구미시 원남로 • 종사자 : 7명

붙임 2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역할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 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 가 능(최장 1년)	3년 이내 중장기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출청소년	가출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 (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 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 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 등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활동 - 의식주,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 - 일시·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에 연계 권장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에 연계 권장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 향 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 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녀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녀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운영 체계도 】

